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요강 (추가모집)



2021년 3월 8일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02)901-8604, fax: 02)901-8606 <http://gifted.duksung.ac.kr>

※ 아래 제시된 모든 학년은 2020학년도 학년을 기준으로 함

2021학년도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 신입생 추가모집 요강

덕성여자대학교 도봉영재교육원에서는 2021학년도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1. 선발 분야 및 정원

선발 분야	선발 인원	
	(현재 중1학년, 08년생)	(현재 중2학년, 07년생)
수 학	10명	※ 4명
과 학	10명	※ 4명
전 산 정 보	10명	

- ※
- 2017학년도 전산정보반 신설
 - 1년간의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사과정 선발 대상자가 됨

2. 선발일정

선발 일정	일자	시간	장소	비고
입학원서 교부	3.10.(수) ~ 3.31.(수)	3.31(수) 16:00 까지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양식사용
전형료 납부	3.10.(수) ~ 3.31.(수)		하나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 <영재교육원>	입금자명은 학생이름(학교 예)나영재(영재중)
서류 제출	3.10.(수) ~ 3.31.(수)	3.31(수) 16:00까지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방문
	3.10.(수) ~ 3.31.(수)	3.30(화) 우체국 소인까지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우편
서류합격자 발표	4.2.(금)	12:00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확인
인성·심층 면접	4.3.(토)	9:00 ~ 12:00 (예정)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4.5.(월)	11:00 (예정)	http://gifted.duksung.ac.kr	홈페이지확인
합격자 등록	4.5(월) ~ 4.9(금)	10:00 ~ 16:00	영재교육원 사무실 (차미리사관 438호)	

3. 교육 프로그램

- ◆ 교육 기간 : 2021. 4 ~ 2021. 12
- ◆ 학기 중에는 매월 격주 토요일(9시~13시) 교육을 실시, 여름방학기간 3일간의 집중수업과 2박 3일간의 산출물 발표대회를 실시함
- ◆ 교육 시간은 각 반별로 교과교육, 인성교육, 현장 방문교육, 산출물 발표대회 등 100시간 이상
- ◆ 과학반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분야를 통합하여 교육함
- ◆ 전산정보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함
 - ◆ - 컴퓨터사고능력, 정보과학적모델링, 컴퓨터프로그래밍, 피지컬컴퓨팅
- ◆ **영재교육원 수업료 : 30만원 (2017학년도부터 적용)**
- ◆ 영재교육원 운영비용을 도봉구에서 지원하며,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수업료, 집중교육과 캠프운영비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부담함.

4. 지원 자격

- 선발요강 공고일 당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21학년도에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거주할 예정인 자로 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재원 중에도 계속 도봉구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함)
- 지원 시 유의 사항
 - 한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 혹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중복하여 지원 가능
 - 타3중복 합격한 경우 1군데만 등록하여야 함
 - 본 영재교육원 합격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없음
(지원한 경우 합격통보 즉시 취소하여야 함)

5. 전형단계 및 선발 방법

가. 일반전형

전형 단계	주관 기관	선발과정	선발방법
1단계	단위 학교	자기추천	가. 학교별 자체 계획에 의해 추진 나. 지원서 접수
2단계		학교장 추천	-기간: 3월10일(수) ~ 3월31일(수) 16:00 까지
3단계	영재교육원	서류심사	가. 정원의 2배수 이내 선발 나. 3단계 합격자 발표 -일시: 4월 2일 (금) 12:00 예정
4단계		인성·심층 면접	3단계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 분야별 면접 -일시: 4월 3일(토) 9:00~12:00 예정
5단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나. 최종 합격자 발표: 4월 5일(월) -홈페이지, 개별통보

나. 특별전형

- 영재교육진흥법시 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사회통합대상자(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10%까지 우선 선발(세부자격 요건은 붙임1 참조)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실시

※ 학교장 추천(전형 2단계) 안내

가. 일반전형 지원자 추천

- 1) 추천대상자 : 소속 학교의 관찰·추천 대상자 중에서 선정된 자
- 2) 자기추천대상자 : 본인이나 보호자가 영재교육 대상자로 생각되어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나. 특별전형 지원자 추천

- 1) 추천 대상: 사회통합대상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중에서 1단계 전형(집중 관찰)을 신청한 자(세부 자격 요건은 붙임1 참조)
- 2) 추천 방법 및 추천 인원: 단위 학교 영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 소속 학년에서 2명 이내로 추천 가능함

6. 지원방법

가. 입학원서 교부

- 기간: 3.10(수) ~ 3.31.(수)
- 영재교육원 홈페이지 (<http://gifted.duksung.ac.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사용

나. 선발 전형료 납부

- 금액 : 40,000원 (※ 특별전형 지원자는 납부하지 않음)
- 납부기간 : 3.10.(수) ~ 3.31.(수)
- 납부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고 입금증 사본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
하나 211-910005-69805 예금주: (학)덕성여자대학교<영재교육원>
※ 송금 시 입금자 정보 : 학생이름(학교) 예) 나영재(영재초)

다. 지원자 제출서류 : 본원 홈페이지에서 소정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 등기우편 및 택배 (우편소인일 3월 30일 화요일 기준), 방문접수
- ▶ 방문 시 접수 장소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제출 서류 목록	비고
지원서 [양식1]	본인 및 보호자 작성
자기소개서 [양식2]	지원학생 본인 직접 작성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양식3]	본인 및 보호자 직접 작성
전형료 입금 확인증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출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주소지 확인용
사회통합대상자 지원서 및 학교장 확인서 [양식4]	본인과 보호자가 작성, 학교장 직인필요 (사회통합 대상자만 해당)
학부모 확인서 [양식5]	보호자 직접 작성 (사회통합 대상자만 해당)
학교장 추천서 [양식6]	학교장 직접 작성, 학교장의 직인필요 (사회통합 대상자 중 학교장 추천대상자유형만 해당)

7. 전형 절차

가. 서류 접수 방법 및 접수기간

- 1)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택배 (우편소인일 3월 30일 화요일 기준), 방문접수
 - ▶ 방문접수 :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영재교육원
- 2) 접수기간 : 3.10(수) ~ 3.31.(수) 16:00까지
- 3) 서류합격자 발표 : 4월 2일 (금) 12:00 예정

나. 면접

- 1) 대상자 : 3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 2) 일시 : 4월 3일 (토)
- 3) 장소 : 3단계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4) 준비물
 - 1) 신분증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2) 문구류 (연필, 지우개)
 - 3) 각 모집분야별 준비물(본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함)

※ 대기실 반입금지 물품

- 통신 가능기기(휴대전화 등)
- 녹음·촬영·녹화가능기기(녹음기,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 MP3 재생기, 라디오, PMP, 휴대용 게임기 등

다. 최종합격자 선정

- 1) 일시 : 4월 5일(월)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문자
- 2) 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추후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단, 2021학년도 입교식 이후에 부정행위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함.)

라. 합격자 등록

- 1) 기간 : 4.5. (월) ~ 4.9. (금) 10:00 - 16:00 (12:00-13:00 제외)
- 2) 방법 : 영재교육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등록
- 3) 제출 서류 :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4) 입학금 및 수업료 : 30만원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부담.)

※ 등록을 하지 않은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입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분야별로 차순위 지원자로 충원함

8. 유의사항

- 모집요강의 미숙지에 따른 문제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선발전형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 선발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접수 후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전형료 납부 시, 입금자 정보는 학생이름(학교명)으로 작성해주세요.
- 최종 합격 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9. 문의처

-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관 438호 도봉영재교육원
- 전화 : 02) 901-8604~5
- 팩스 : 02) 901-8606
- 이메일 : gifted@duksung.ac.kr
- 홈페이지 : <http://gifted.duksung.ac.kr>

사회통합대상자의 유형 및 자격

1.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으로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의 보훈자 자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해당되는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는 정원의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한 자
 -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개임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요건

-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에 따른 생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사회다양성전형

■ 사회다양성전형 필수 요건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직장 가입자' 및 '혼합'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확인

[요건]

- ◎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 금액은 부모(※ 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 금액이 아래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출처: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보건복지부, '19.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입금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사회다양성 1순위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다문화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함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자녀(한부모가정 자녀)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경우에도 친부·친모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부금액(연간)을 모두 확인·합산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 수 제한 없음)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 학교별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로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한 유형 중 교육감이 승인한 자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 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6만2천원)



■ 근거

- 2020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송부(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492, 2019.12.12.)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의체 협의회 결과 알림(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4451, 2020.3.9.)
-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연간 재산세 산출세액 제출(서울특별시 세무과-7770, 2020.3.31.)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2020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19.12.) 및 서울특별시 재산세 납부금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자녀(사·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 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수급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학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가7원수별 증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세목별로 출력하여 제출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지방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성공적 학업 수행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학교 여건과 특색, 선발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생활 및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체제 구축 등
 - 학생 스스로 구성,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학생 동아리 지원
 - 교원 또는 졸업생 등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 학교별 입학 전형 요강에 운영 프로그램 안내 (2021학년도 학교별 전형요강 참조)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는 정원의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개 사항임